

工場建物의 範圍에 関한 小考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規를 中心으로=

中 敬 金

〈本協會 企劃調查部 課長代理〉

一. 序 說

火災로 말미암아 人命의 被害나 財產上의 損失을 豫防하고 迅速하게 災害를 復舊하며 人命被害에 對한 適正한 補償이라는 社會·經濟政策的 見地에서 制定된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이하 火保法이라 한다) 이施行되지도 四年の 歲月이 經過하였다.

그間 同法施行令과 同施行規則의 數次補完으로 어느 程度 理論的 體系와 解釋上 疑問點이統一의 整理가 된 것은 事實이나 立法自體의 不備點은 补完되지 않고, 또한 解釋上 問題點도 속출하고 있다. 即 火保法의 法的性格,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損害賠償責任의 範圍, 特殊建物所有者의 身體特約付火災保險加入義務條項의 立法上不完全, 特約付火災保險의 特殊性等 깊이 研究할 問題가 허다 하나 무엇보다 「特殊建物의 範圍」에 가장 問題點이 많다. 왜냐하면 火保法의 立法趣旨에 充實하려면 特殊建物의 範圍를 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요, 特殊建物所有者的 私有財產權保護라는 角度에서는 좀개 해석할 必要성이 있는데다가 너무立法이 矜持하기 때문이다.

特殊建物의 範圍에 對해서 특히 問題되는 것은 火保法施行令 第2條 第1項 第12號「延面積

의 合計가 1,000m² 以上인 工場建物과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依한 工業團地에 所屬된 모든 工場 및 그 附屬建物」을 어떻게 解釋하느냐이다. 即 「工場의 概念」, 「工場建物의 範圍에 순수한 工場의 建物만을 지칭하느냐 아니면 建物內에 施設된 機械는 勿論 建物밖에 施設된 機械도 包含하는가 여부」 「工場建物」과 「工場」의 相異性 여부」 및 그 附屬建物이라는 語句가 同號前段에도 連結되는가, 後段에만 連結되는가等이 문제되고 있다.

이하 이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고찰하고자 한다.

二. 工場의 概念

火保法은 「工場」이라는 用語는 있으나 (火保法 第2條 第1號, "나") 그 概念은 明示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立法에 따라 工場의 概念을 明文化 한 例도 있다. 例를 들면 工場抵當法에서 工場은 「營業을 하기 위하여 物品의 製造·加工· 또는 印刷나 摄影의 目的에 使用하는 場所와 营業을 하기 위하여 放送의 目的 또는 電氣나 까스의 供給의 目的에 使用하는 場所는 이를 工場으로 본다」라고 하여 廣範圍한 概念을 使用하고 있다. (工場抵當法 第2條 第1項 및 第2項 參照) 이는 施設的 概念보다 場所的 概念을 重要

論壇

視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消防法規에서는 工場의 概念을 「機械 또는 道具를 使用하여 物件을 製造·改造·加工·修理·包裝等을 하기 위하여 多數人이 勤務하는 施設 또는 建築物」이라고 定義하고 있어 工場은 建物 및 施設의 一切을 包含하는 概念으로 使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消防法施行令 第12條別表 12號 參照)。

그러면 火保法上 工場概念은 어떻게 定義할 것인가는 火保法의 目的과 立法趣旨가 充分히 考慮되어야 할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火保法은 火災豫防과 國民의 生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 补償하여 國民經濟의 安全을 기하는데 그目的이 있으므로 어느 法規上의 工場概念 보다 넓게 定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工場은 「機械 또는 道具를 使用하여 物件을 製造·改造·加工·修理·包裝·印刷·ガス나 電氣의 供給을 하기 위한 施設 또는 建物」을 指稱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工場개념을 定義하여도 抽象의 임은 免하지 못하므로 實務上 工場이냐 아니냐에 對한 意見이 구구 합은 말할 것도 없다. 例를 들면 發電所가 工場에 該當되느냐에 對해 問題가 된 일이 있다. 即 耐火物質인 水力を 利用하여 無形인 電力を 供給하는 特殊的 施設로 보아 通常의 工場이라고 볼 수 없다는데 異見이 提起된 것이다. 要컨대 「物件」을 製造하는 施設은 工場임에 異論이 있을 수 없으나 電氣가 物件이냐가 문제이다. 이에 對해 民法은 「本法에서 物件이라함은 有體物 및 電氣 其他 管理할 수 있는 自然力を 말한다」(民法 第98條)고 規定하여 有體物인 電氣도 物件임을 明示하고 있다.勿論 物件의 概念을 有體物에 限하느냐 有體物까지도 포함시키느냐는立法上 對立되고 있다. 即 Rome 法·佛民法(第516條) 瑞西民法(第713條)等에서는 有體物을 포함시키나, 獨逸民法(90條) 舊民法(第85

條)에서는 物件을 有體物에 限定하였다. 科學이 發達됨에 따라 人力으로 管理할 수 있는 電氣나 自然力이 去來의 容體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事實이며 無體物을 物件에 포함시키는立法은 이러한 財產去來上의 實際의 必要에 應할 수 있다는데 妥當한 태도이다.

따라서 發電所는 施設 또는 供給하는 物件이 特殊하다는 것 뿐이지 電氣라는 物件을 供給하기 위한 施設이 工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根據가 없음은明白하다. 다만 發電所의 施設은 火災危險이 희박하다는 觀點에서 保險料率의 適用을 달리 하여야 한다는 것은 別個 問題이다.

또한 沿岸埠頭의 荷役作業施設이 工場概念에 포함될 수 있느냐 여부에 對해서도 實際上 問題된 일이 있다. 이에 對해 劃一의 으로 斷定할 수는 없으나 火保法上 工場concept을 既述한바와 같이 定義한다면 일 반적으로 荷役作業施設을 工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三. 工場建物의 範圍

1. 延面積의 合計가 1,000m²以上인 工場建物 (火保法 施行令 第2條 第1項12號前段).

가. 延面積에 合計

以上의 工場이 모두 特殊建物로 取扱되는 것 이 아니라 일정한 크기 즉 延面積의 合計가 1,000m² 이상인 工場建物이어야 한다. 여기서 「延面積의 合計」는 「延面積」과는 區別되는 것으로 「數棟建物面積의 合算」을 指稱하는 바, 간혹 「延面積」과 混同하는 事例가 있다. 「延面積」(火保法施行令 第2條第1項1號 參照)은 一棟建物을前提로 한것이요 「延面積의 合計」는 數棟의 建物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區別은 建築法施行令에서도 볼 수 있다(註 1).

이와 같이 工場의 경우만 「延面積의 合計」라고 한 理由는 工場建物은 一定區域內에 一棟은

論壇

회소하고 거의 數棟의 建物로 構成되어 있기 때문이다. 即機械施設을 한 主된 建物이의 倉庫, 事務室, 實驗室, 油類貯藏所, 기숙사 및 其他 附屬建物等으로 構成되어 있는 것이一般的이다. 한편 主된 工場建物相互間, 또는 主된 建物과 附屬建物과는 場所的・機能的으로 밀접한 關聯이 있고 떼로는 벨트롬비아等으로 連結되어 있어 別棟建物이라 하여도 火災라는 災難에는同一한 危險에 處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建物의 延面積을 合計하여 付保對象으로 함은妥當하다. 萬一, 「延面積의 合計」라 하지 않고 「延面積」이 $1,000m^2$ 이상인 工場建物로 限定하였다던 數棟의 建物中, 一棟의 建物面積이 $1,000m^2$ 以上인 建物만이 特殊建物로 取扱되고 $1,000m^2$ 未滿인 建物은 除外되어同一區域內에 있는 工場建物이라도 具體的으로 相異한 取扱을 하게되는 모순이 發生할 것이다.

「延面積의 合計」와 관련하여 實務上 어려운 문제가 許多하다. 몇 個의 實例를 들어 보고자 한다.

①同一區域內에 「延面積」이 $1,000m^2$ 未滿인 數棟의 工場建物이 있고 그 建物의 所有者가 각各相異할 때, 그 數棟建物의 延面積을 合計하여 特殊建物로 取扱할 수 있는가 문제이다. 建物所有者가 각各다를 때에는同一區域內에 位置한다 하여도 別個의 建物로 取扱할 것이지 數個의 建物面積을 合計하여 付保義務를 負擔시킴은 不當하며 더구나 一棟建物의 所有者는 付保하려 하나 他棟所有者가 不應할 때는 結局 當該建物을 未加入建物로 取扱해야 되는 不當한 結果가 나타난다고 한다. 그렇다고 付保意思가 있는 所有者の 一棟建物만 付保시킨다면 數棟의 延面積을 合計하여 特殊建物로 된다는 觀點에서 볼 때 一部保險이 될 것이고, 數棟의 建物을 完全히 分離하여 生覺한다면 延面積의 未達로 特殊建物이 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生覺컨대 數棟의 建物間에 場所的・構造的으로

보아 延燒의 우려가 充分히 있는 때에는 建物의 所有者가 相異하여도同一區域內의 共同危險狀態에 있으므로 別個로 取扱하는 것은 火保法의 趣旨로 보아 不當하며 또한 火保法에서 반드시 所有權者의 同一性을 要求하고 있지도 않다(註2). 오늘날 企業經營上 企業의 不動產이 實際는同一人の 所有이면서 別個의 法人體 또는 別個人의 所有로 分散하는 實例가 있는 만큼, 火保法의 運營은 이러한 企業經營上의 次元과 同一한立場에 설수는 없다.

②工場의 所有者는同一하나 道路의 開設로工場建物이 地域의으로 分離된 때에 그 建物의 延面積을 合計하느냐이다. 道路等에 依하여工場建物이 分離된 경우 火災延燒의 憂慮가 全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道路의 幅, 其他 施設物等을 참작 具體的으로 決定하여야 할 것이다(註3). 그러나 燃燒될 수 있는 物質로 兩建物을 連結시키는 施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火災延燒의 우려가 全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同一區域內의 工場建物로 取扱 延面積을 合計하여야 할 것이다.

③工場建物의 延面積의 合計가 $1,000m^2$ 以上이 되나 一部는 工場, 殘餘部分은 他業種으로 使用하고 있는 경우에 實際作業場으로 使用하는 物의 規模가 어느 程度래야 全體의 建物을 特殊建物로 取扱하는가 문제이다. 例를 들면 廢業中에 있는 數棟의 工場建物의 一部를 所有者 또는 貸借人이 小規模의 作業場所로 使用하고 있을 때 그 全體建物을 火保法上 工場建物로 取扱할 수 있느냐이다. 이것도 劃一的으로 決定할수는 없고, 作業人員數, 作業場의 規模, 建物間의 거리等을 參考하여 具體的으로 決定할 事實判斷의 問題라 하겠다.

나. 工場建物의 範圍

「工場建物」에 그 內部 및 屋外에 施設된 機械 또는 其他 施設物까지 포함 하느냐 아니면 순수한

「建物」만을 지칭하는 것인가는 解釋論上, 實務上 크나큰 論爭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特殊建物範圍를 決定함에 難題가 아닐 수 없다. 이에는 「工場建物」에 機械施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否定的見解와 包含한다는 肯定的見解가 對立되고 있다.

① 否定的見解

첫째, 火保法 및 同施行令과 同施行規則에는 「……建物」이라고 規定했을 뿐 機械施設까지 包含한다는 語句는 一切 없다는 것이다(火保法 第2條, 第4條~第6條, 第8條, 第16條, 同施行令 第2條 第4條 同施行規則 第2條의 2 參照)

둘째, 火保法施行規則 第2條의 2 第1項 「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는 建物의 每坪當價額決定에 必要한 基準만을 規定하고 機械等에 관한 評價基準이 全혀 없는 것은 工場建物의 범위에 機械施設等은 一切 包含되지 않는다는 것을 表示한 것이라고 한다.

셋째, 工場建物 卽 露天에 施設한 機械施設은 勿論 建物內에 施設된 機械도 建物 그 自體와는 嚴然히 区別되는 別個의 物件이므로 建物概念에 이러한 機械施設까지 包含시킨다는 것은 지나친 法의 擴大解釋이라 한다.

넷째 行令 第2條 第1項 12號에 「工業園地에 所屬된 모든 工場」이라고 한 것과 關聯하여 考察하면 「工場」이라 함은 一定한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建物 및 機械施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建物과 機械施設은 工場概念을構成하는 別個의 要素인바, 12號前段에서 말하는 「工場建物」이라 한 것은 工場의 構成要素中 建物만을 지칭하는 것이 明白하다는 것이다. 萬一 工場建物에 機械施設까지 包含하는 것으로 解釋한다면 同號後段의 「모든 工場」과 어떻게 区別되는가는 의문이며, 따라서 「工場」과 「工場建物」라는 法文에도 区別하고 있고, 論理上으로 区別해야 한다고 한다.

② 肯定的見解

火保法令上 「建物」이라고 만 規定되어 있는 것도 事實이고 建物과 機械施設과는 別個인 것도 否認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理由로서 「工場建物」 개념에는 機械施設도 當然히 包含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첫째, 舊特殊建物時價決定基準額表(舊施行規則 第2條의 2) 備考欄에 「工場建物의 工作機械其他 工場用特殊施設의 價額은 別途로 算出加算하여야 한다」고 規定하였고 機械施設에 對한 具體的時價決定基準이 明示된 바 없기 때문에 工場建物에 機械施設이 包含되지 않는다고 解釋할 수 있는지 모른다. 改正된 施行規則(財務部令 第1248號, 1977. 3. 29) 第2條의 2 第1項 但書에 「다만, 工場의 機械設備 및 附帶裝置에 對한 評價方法은 法人稅法施行令의 規定에 依한 減價償却을 하고 이에 都賣物價上 昇率을 參酌하여 算定한 價額을 時價로 한다」고 規定하여 工場의 機械施設에 對한 時價評價方法을 어느 정도 具體化하고 있으며 이는 工場建物에 機械設備까지 포함된다는 것을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機械設備에 對하여 建物처럼 具體的時價基準額表化할 수 없는 것은 立法 技術上不可能하기 때문이다.

한편 特殊建物時價調查會의 構成員으로 大韓機械學會會長이 추천하는 機械專門家를 規定하고 있는 것은(施行規則 第2條의 2 第4項 "參照") 工場建物概念에 機械施設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둘째, 「工場」과 「工場建物」의 概念이 別個의 것이라는 것은 形式論理에 不過하다. 다만, 同一條項에 다른 表現을 한 것은 立法의 錯誤이지 別個의 意味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輸出產業工業園地開發造成法에 依한 工業園地에 所屬된 모든 工場에는 機械와 建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데 異論이 없음에 反하여, 그外의 工場에는 建物에 限하여 할 實際的理由는 어려

論壇

있는가? 輸出產業工業團地內의 工場機械만이 火災의 憂慮가 濃厚하고 그 以外의 工場機械施設은 火災의 危險性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工場」과 「工場建物」 개념을 區別할 理由가 없다면 오히려 同號 前段의 「工場建物」에는 機械施設一切를 포함하는 것으로 解釋함이 타당하며 火保法의 趣旨에도 맞는다.

셋째, 火保法이 工場建物을 特殊建物로 取扱 켜 한 것은 工場에서의 火災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고 工場火災로 인한 人命被害와 物的損失에 對한 充分한 補償을 하도록 하려는데 그目的이 있으므로(火保法 第1條 參照) 工場火災의 主된 要因인 機械設備等을 點檢하지 않고, 危險狀態를 放置하든가 莫大한 價值를 구유하고 있는 機械設備를 付保對象에서 除外하는 火保法의 目的에 充實치 못한 解釋이라 아니할 수 없다.

넷째, 工場의 建物은 原料 및 製品의 保管用倉庫를 除外한 大部分의 建物은 그 内部에 巨大한 機械施設이 되어 있어 建物과 機械는 有機的一體(場所의·機能的)를 이루고 있는 만큼 工場建物內의 機械設備를 付保對象에서 除外한다는 것은 工場建物과 機械設備와의 밀접한 構造的, 機能的 特殊性을 망각한 理論인 것이다.

다섯째, 工場建物에서 機械設備를 除外시킴은 火災危險性判斷의 主客顛到인 感이 있다. 工場建物을 付保하지 않을 때에는 一定한 處罰을 할 수 있음에 反하여(火保法 第23條) 火災發生의 主된 危險的 要因을 內包하고 있는 그 施設을 付保對象에서 除外시켜 處罰을 免하게 하려는 해석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火保法 第4條에 依하여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그 建物의 火災로 因하여 他人이 死亡 또는 負傷한 때에는 建物所有者的 過失有無를 不問하고 火保法 第8條에 規定한 [範圍內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하여 工場建物의 火災發生時에는 被害者가 被害補償을 받을 수 있

으나, 萬一「工場建物」의 概念에 機械施設이 包含되지 않는다면 工場의 機械施設에서만 火災가 發生하여 人命被害가 發生하더라도 工場所有者에게 無過失損害賠償責任을 認定할 수 없다는不合理한 結論에 이른다. 「工場建物」에 機械設備까지 포함시켜야 할 決定的 理由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일곱째, 理由는 保險者間의 内部的問題이기는 하지만 同一構內에 있는 工場建物은 韓國火災保險協會가, 機械等의 施設은 原受社가 付保業務를 取扱하게 될 때 特殊建物所有者에게 번잡과 不便을 줄 것이고, 한편 保險者間의 過多競爭을 야기시켜 保險募集秩序를 紊亂케 할 우려를 全혀 排除할 수 없으며 한편 工場建物과 그 機械施設은 單一危險物임에도 不拘하고 安全點檢과 保險契約引受에 無理한 分離를 할 경우에 再保險處理에 있어 保有額決定等 再保處理上 難點이 있다.

이러한 保險行政의 合目的性과 火保法의 立法 趣旨로 보아 工場建物에 附屬된 機械施設과 附帶施設裝置는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註 4).

2.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依한 工業團地에 所屬된 모든 工場 및 그 附屬建物.

(施行令 第2條 第1項 第12號 後段)

가.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

輸出產業에 使用하는 工業團地를 開發하여 輸出產業의 基盤을 確固히 함으로써 輸出의 振興과 均衡있는 國民經濟發展을 目的으로 1964年에 制定公布된 法律로서(註 5) 이 法에 依하여造成된 工業團地에 設立된 工場을 特殊建物로 한 것이다. 여기서 工業團地라 함은 輸出產業에 使用하기 為하여 包括的 計劃에 따라 區劃되고 開發되는 一團의 工業團地를 말한다(同法 第2條 第1項).

이러한 工團內의 工場을 特殊建物로 取扱한 理

由는 첫째 工團內의 工場은 國家의 輸出產業育成策의 一環으로써 工場設立乃至 稅制面에서 許多한 恵澤을 받고 있으며(同法 第18條, 第19條, 參照). 둘째, 一定區割內에 數個의 工場이 群集해 있으므로 火災에 對하여 共同危險에 直面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工業團地에 있는 工場은 規模의 大小를 不問하고 特殊建物로 取扱하였다.

나. 工業團地內의 工場의 範圍

工業團地內에 入住한 工場이면 工場의 面積, 業種等이 무엇이냐 不問한다. 同法에 依한 工業團地內에 入住하지 아니한 工場建物은 當該建物의 延面積合計가 $1,000m^2$ 以上이어야 한다는 制限이 있으나, 工業團地內에 設置된 工場은 이러한 制限의 必要性도 없다. 다만 工業團地內에 入住할 수 있는 工場은 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一定한 商品에 關하여相當한 製造技術과 輸出實績을 保有한者로서 工業團地管理廳長의 指定을 얻어야 하고(同法 第16條) 同法施行令 第6條의 要件을 具備하여야 한다.

여기의 工場概念은 特別한 意味가 있는 것이 아니라 「工場建物」과 同一한 概念임은前述한 바와 같다(註 6).

다. 그 附屬建物

그 工場에 附屬된 建物도 特殊建物로 取扱된다. 附屬建物이라 함은 主된 建物에 附屬하여 主된 建物의 效用이나 機能을 補完 또는 增進시키는 建物을 總稱하는 것으로서 例를 들면 倉庫, 車庫·食堂·寄宿舍·油類貯藏탱크, 事務室·便所 및 警備室等이 이에 屬한다.

문제는 「그 附屬建物」이라는 語句가 施行令 第2條 第1項 12號 前段 即 「延面積의 合計가 $1,000m^2$ 以上인 工場建物」 및 「그 附屬建物」이라는 意味로도 보아야 하느냐, 아니면 法文 그대로 同號 後段, 「……工業團地에 所屬된 모든 工場 및 그 附屬建物」로만 보아야 하느냐에 對해

意見이 一致되지 않고 있다. 「그 附屬建物」이라는 語句가 同號 前段 「工場建物」이라는 語句에 결리지 않는다면 工團에 入住한 工場의 附屬建物만이 그 主된 建物과 함께 特殊建物로 取扱되고 있을 뿐, 工團에 入住하지 않은 工場의 附屬建物은 特殊建物로 取扱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解釋하느냐는 中대한 문제이다.

생각컨대 同號에 대한立法表現上功過를 不問한다면 實際는 無用한 論議라 하겠다. 왜냐하면 「延面積의 合計」라면 主된 建物의 延面積만의 合計가 아니라 同一區域內의 數棟建物 그것이 主된 建物이건 附屬建物이건 不問하고 모든 工場建物面積의 合計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當然히 附屬建物도 延面積의 合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語文法上으로 보아 「및 그 附屬建物」은 「延面積의 合計 $1,000m^2$ 以上인 工場建物」에는 결리지 않으므로 工場附屬建物은 除外된다는 견해는 「延面積의 合計」라는 意味를 誤解한所致이다.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依한 工業團地에 入住한 工場은 規模의 大小를 不問하고 特殊建物로 取扱되기 때문에 그 附屬建物로 取扱하기 위해서 「그 附屬建物」이라는 表現을 썼는지 모르지만 「工場」개념을 「建物 및 기계시설」의一切를 지칭하는 것으로 定義한다면 不必要한 文句라 하겠다. 다만 注意的으로 工場의 범위를 부연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論理는 施行令 第2條 第1項 1號에서 實證하고 있다. 即 舊施行令에서는 「國有財產法 第3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한 不動產中 延面積이 $1,000m^2$ 以上인 建物」이라고 規定하여 그 附屬建物은 特殊建物로 取扱할 수 없는 모순에 直面하였다. 이를 是正하기 為하여 改正施行令 同號後段에 「및 같은 用途로 使用하는 附屬建物」이라는 語句를 追加시켰던 것이다. 萬一 同號를 「……不動產中 延面積의 合計 $1,000m^2$

論壇

以上인 建物]이라고 規定하였다면 이의한 改正이 必要 없었을 것이다.

3. 餘 論

마지막으로 工場建物과 關聯하여 부연할 것은 工場建物 또는 機械施設이 不燃性 乃至 耐火性 있는 資材로 된 때에는 特殊建物인 工場建物로 取扱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왜냐하면 火災保險의 對象은 火災로 인한 燃失을前提한 것이므로 不燃資材를 使用한 建物 또는 鐵鋼工場施設과 같이 극히 部分的인 燃火性 附帶施設을 除外하고는 火災로 因한 機械施設의 損失은 거의 想像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의한 施設의 工場은 保險料率割引문제는 別論으로 하고 工場建物이 不燃材料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工場이라도 特殊建物對象에서 除外된다는 火保法上의 明文規定이 없기 때문에 特殊建物對象에서 除外될 수 없다(註 7).

四. 結 語

이상 火保法上 工場建物의 關한 몇 가지 문제되는 점을 考察해 보았다. 이 外, 工場概念과 範圍의 細部의 考察, 工場建物의 從物, 特殊建物에서 除外되는 工場建物等에 對해 더 言及이 있어야 할 것이나 紙面關係로 筆者가 執筆

中에 있는 火保法解說書에서 다루기로 한다.

特約付火災保險(火保法 第5條 參照)은 義務保險의 一種으로서 國民의 財產權과 밀접한 關聯이 있다. 따라서 特殊建物의 範圍를 決定하는 問題는 特殊建物所有者的 權益과 火保法의 目的 을 調和할 수 있는 点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1) 建築法施行令 第112條(大規模木造等의 建築物의 基地안에 있어서의 通路) 第1項은 一棟의 建物을 前提로 하였기 때문에 「延面積」이라는 概念을 使用하고 있는 反面에 第2項에는 同一基地안에 二棟以上의 建築物이 있는 경우에는 그 「延面積의 合計」가 $1,000m^2$ 以上을 넘을 때에는 延面積의 合計 $1,000m^2$ 以内마다 建築物로 區劃하고 그 주위에 幅 3m以上의 通路를 設置하도록 하였다.
- 2) 財務 第1223—1694號(1975. 10. 18).
- 3) 同一會社의 工場建物이 公道에 依해서 隔離되어 있을 때는 當該 公道의 路幅과 工場建物의 延燒性等을 감안 事實判斷에 依한 것이다. 同一會社의 工場建物이 地番은 相異하나 隣接한 基地위에 각各 位置한 경우에는 비록 地番이 相異한 경우라도 火災危險과 地番과는 關聯이 없으므로 하나의 危險으로 보아 特殊建物로 取扱해야 한다는 것이 財務部의 解釋이다(保 2. 1223—347, 1977. 3. 14).
- 4) 火保法施行令 「工場 및 附屬建物」의 用語定義에 대한 財務部解釋(保險 1223—1094, 75. 6. 30).
- 5) 大統領令 第1656號.
- 6)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서는 “工場”이라는 概念을 使用치 않고 “企業體”라는 用語를 使用하고 있다(同法 第2條 第2項, 第16條 參照).
- 7) 財務部有權解釋(保險 1223—2146, 1975. 12. 30).